

의안번호	제 686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4월 13일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686
----------	-----

제출연월일 : 2021년 4월 1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21년도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2,250백만원(도 990, 시군 1,260)]

- 출연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급증하는 신용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 출연 내역 : 재단 자본금(기본재산) 확충 출연금
- 기대 효과
 - 소상공인 경영악화 등으로 보증 잔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긴급한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여력 유지
 - ※ 신용보증 적정 운용 배수 : 잔여자본금 10배 수준
 -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비용추계서 : 붙임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경제기업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생활경제팀	강성환	음창규	오숙영	220-3252

기관명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장) : 김교선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청주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 규모 : 1본부, 4부 5지점 1센터 - 기관성격 : 출자·출연기관 - 주요사업 :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권 행사 등 																																
출자·출연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 예정금액 : 2,250백만원(도비 990, 시군비 1,26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사업기간</th> <th rowspan="2">2020년 예산액 (출연액)</th> <th rowspan="2">2021년 요구액</th> <th colspan="5">재원별</th> </tr> <tr> <th>계</th> <th>국비</th> <th>도비</th> <th>시군비</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0</td> <td>2,250</td> <td>3,000</td> <td>750</td> <td>990</td> <td>1,260</td> <td>0</td> </tr> <tr> <td>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td> <td>2021</td> <td></td> <td>2,250</td> <td>3,000</td> <td>750</td> <td>990</td> <td>1,260</td> <td>0</td> </tr> </tbody> </table>	구분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출연액)	20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계		0	2,250	3,000	750	990	1,260	0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21		2,250	3,000	750	990	1,260	0
구분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출연액)	2021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계		0	2,250	3,000	750	990	1,260	0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21		2,250	3,000	750	990	1,260	0																									
출자·출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보증잔액 급증에 따라 대위변제 등 손실발생 또한 큰 폭의 증가 예상 ○ '19년부터 자본금(기본재산) 잠식 및 '23년 이후부터는 적정 운용 배수(10배)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급증하는 보증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을 통해 자본금 확충 필요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지도감독 부서이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악화로 2020년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2~3배 증가로 손실누적 심화 예상 ○ 적정 운용 배수 내 신용보증을 위한 출연금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4. 관련 법령 																																

□ 관리 ·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 2019년('18실적)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선정(나등급) 선정
※ '20년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지원 추진을 위해 평가 제외

○ 감사 : 충북도 감사(2017), 중소벤처기업부(2016)

②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매칭(국비 : 지방비 매칭 25% : 75%) 계획이며,
- 코로나19로 인한 특례보증 등 집중 지원으로 보증사고 및 손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보증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③ 출연금 검토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 출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국 비(25%)	750	750				
도 비(33%)	5,790	990	1,200	1,200	1,200	1,200
시군비(42%)	8,460	1,260	1,800	1,800	1,800	1,800

※ 2차년도부터 국비 지원시 도비, 시군비 조정

충북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 제6022호)			전화번호 : 043-249-5700			
				홈페이지 : www.cbsinbo.or.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03.26. 충북신용보증조합 설립 허가 - '99.05.10. 업무개시 - '00.03.01. 조합 → 재단 전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01.02.05. 본점이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5층) - '02.05.09. 충주지점 개점 - '07.03.12. 남부지점 개점 - '09.12.02. 제천시지점 개점 - '17.11.13. 혁신도시지점 개점 - '19.12.02. 동청주지점 개점 			기관 형태	출연		
인원현황	계('21.04.05.현원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68명		67명	1명			
임원 ('21.04.05.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김○○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2021.01.01. ~ 2022.12.31.			
	당연직이사(비상임)	신○○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2021.01.01. ~ 직만료시			
	당연직이사(비상임)	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9.12.21. ~ 직만료시			
	이사(비상임)	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2019.07.01. ~ 2022.06.30.			
	이사(비상임)	김○○	청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2020.05.26. ~ 2023.05.25.			
	감사(비상임)	신○○	정진회계법인 회계사	2018.06.11. ~ 2021.06.10.			
주요기능	-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자 본 금 (단위:백만원)		163,320 (2020. 12. 31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총 173,000 (도비 '16년까지 / 32,9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 기준	자산	189,154
	예산액	37,109	44,145	50,067		부채	25,834
	지자체 지원액	-	-	-		자본	163,32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손실	
	12,973				20,609	7,636	

□ 출자 ·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2021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경제기업과		출연	2,250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 정부 특례보증 공급 확대 등으로 보증사고 및 손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단의 안정적 보증 운용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
- ※ 신용보증 적정 운용 배수 : 잔여자본금 10배 수준

□ 출연개요

- 사업명 : 2021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기간 : 2021
- 출연액 : 2,250백만원(1회 추정)
 - ※ 도비 990백만원, 시·군비 1,260백만원
- 주요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등의 금융채무 보증

□ 산출기초

-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도·시군 분담 비율
 - 총3,000백만원 : 국비 750(25%), 도비 990(33%), 시·군 1,260(42%)

【 연도별 도비 출연 내역 】

(단위: 억원)

구분	계	'99(설립)	'10년까지	'11	'12	'13	'14	'15	'16
출연금	329	100	147	9	11	15	17	18	12

□ 기대효과

-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 기여
-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통한 조기 경기회복 지원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손실액 미충원 시 지속적인 기본재산 감소로 운용 배수 증가
- 운용배수 법정한도(15배 이내) 초과 시 신용보증 정책의 제한적 운용 불가피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4.5.2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결손보전) 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등의 기타수입

제1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급증하는 신용 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보증잔액 급증에 따라 대위변제 등 손실 발생 또한 큰 폭의 증가 예상
- '19년부터 잔여 자본금이 잠식되고, '23년 이후부터 적정운용 배수초과 예상되므로 자본금 확충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수요 지속대응 여건 마련

3. 비용 추계결과

- 추계기간 : 총 150억, 연 30억원 × 5년간('21년 ~ '25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 분담금
 - '21 : 총 30억 / 국비 7.5(25%), 도비 9.9(33%), 시·군비 12.6(42%)
※ 2021년 국비 25% 매칭 지원 예정으로 보조금 반영
 - '22 ~ '25(4년간) 총 120억 / 도비 48(40%), 시군비 72(60%)
※ 향후 국비 지원시 변경 반영

4.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 출	15,000	3,000	3,000	3,000	3,000	3,000
국비(25%)	750	750				
도비(33%)	5,790	990	1,200	1,200	1,200	1,200
시군비(42%)	8,460	1,260	1,800	1,800	1,800	1,800